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2104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훈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2086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100,000,00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고쳐 쓰는 부분

- 제7면 제19행의 “질권을 설정받았다가 2017. 10. 31. 위 질권을 해지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를 “질권을 설정받았다가 Q가 2017. 10. 31. 그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사실에 비추어 질권자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해 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15행의 “갑 제7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7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16행의 “피고의 영업당당자는 2017. 12. 8.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진술서에는”을 “피고는 2017. 12. 8. 신용보증기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에는”으로 고쳐 쓴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0면 제3행에 “④ 피고의 직원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2017. 6. 30., 2017. 7. 11., 2017. 7.

27., 2017. 8. 31. A의 장모, 백부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다가

무산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⑤ Q는 2005년

3월경 R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보험료 납기 15년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약 4,5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납입만기를 약 3년여 앞둔 2017. 10. 31. 위 종신보험 계약을 해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종신보험 계약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당시 A의 채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음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박창우, 판사 권오상